#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5 발의연월일: 2021. 1. 13.

발 의 자:이해식・양정숙・진성준

이상헌 • 한병도 • 노웅래

인재근 • 이학영 • 서영석

오영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료, 돌봄, 물류,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저임금·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보호·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, 이미 미국, 캐나다, 영국,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노 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평상시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,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재난의 대응·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·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.
- 다.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7조).
- 라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.
- 마.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3조 및 제24조).

##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  - 2. "대면업무"란 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, 교육, 환경, 통신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국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.
  - 3. "필수업종"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 중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업종을 말한다.

- 4. "노무제공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가.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
  - 나.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- 5. "필수노동자"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.
- 6. "노무수령자"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,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필수노동자의 안정적·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고용조건 개선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
  - 2. 긴급상황 시 필수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 재정지원
  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예방접종 등 의료조치 제공
  - 4. 재난 시 돌봄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돌봄서비 스 제공

- 5. 유해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거나 특정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지원
- 6.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국가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4조(노무수령자의 책무) ① 노무수령자는 국민의 생명·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노무수령자는 필수노동자의 안정적·지속적인 근로를 위하여 안 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.
  - ③ 노무수령자는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업무의 수행과정을 수시로 조사하여 추가 인력과 장비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① 국민은 국민의 생명·안전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민은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 극복과 복구, 국민의 생명 및 안전,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6조(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책무) ①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노무수령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.
  - ② 필수노동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노무수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제7조(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의 지정 등) ①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업무영역별로 적절한 지원 주체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필 요한 경우에 국가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 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요청을 받아 업무영역별 지원주체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 종사자
  - 2. 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한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 원 종사자
  - 3. 전국단위 물류유통업 종사자
  - 4.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정기노선으로 연결하는 시외고속버스, 시외직행버스, 시외버스, 철도 등 전국단위 대중교통 종사자 등

- 5. 중앙행정기관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
- 6. 중앙행정기관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
- 7. 그 밖에 재난 시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
- ③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시·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- 2. 종합병원을 포함한 2차 진료기관 종사자
- 3. 시 · 도의 물류 유통업 종사자
- 4. 시내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시·도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종사자
- 5. 시 · 도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
- 6. 시 · 도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
- 7. 그 밖에 재난 시 시·도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
- ④ 시·군·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시・군・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, 보육서비스 종사자
- 2.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
- 3. 시·군·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의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
- 4. 시・군・구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
- 5.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, 관리업무 종사자
- 6. 시 · 군 · 구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

- 7. 그 밖에 재난 시 시·군·구가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
- 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재난 시 필수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  - ② 재난 시 필수노동자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

- 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  - 4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- 5.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- 6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민관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
- 7.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- 8.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,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한다)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

-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·도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계획(이하 "시·도별 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별 기본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의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④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·군·구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는 수립된 시·도별 기본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·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인구 및 산업구조,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
- 3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- 4.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부 측 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
- 2. 노무수령자를 대표하는 사람
- 3.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(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
- 4.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
- 5.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

- 6. 필수노동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7. 전국단위 노동조합, 필수노동자 협회 등의 종사자
-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 위공무원단과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다.
- ⑧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,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- 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6조(시·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) 시·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소속으로 시·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(이하 "시·도별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시·도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.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시· 군·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 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취합하여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치) 국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보호지원 시책추진과 민간과의 협력

- 제19조(민간조직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참여 독려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, 소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수노동

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민간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.

- 제20조(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자원봉사자의 필수노동 제공과 보호) ① 노무수령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필수업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노무수령자는 제1항에 따라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교육 및 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필수노동의 정의, 범위 및 중요성
  - 2.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방안
  - 3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

- 4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3조(필수노동자협회) ① 필수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⑥ 노무수령자는 재난 시 필수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.
- 제24조(공제사업) ① 협회는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금,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25조(포상 및 평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,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 게 실천한 공공기관
- 2.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,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
-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성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
 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
 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